

■ 인지세 안내

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(전매)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'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'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■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

- 과세대상 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(전매) 계약서
- 납부기한·방법 :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
• (관련법령)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,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

■ 전자수입인지 구입처

- 수입인지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·우체국·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
■ 가산세 개정사항('21.1.1. 부터 적용)·(관련법령)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

-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
-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
- 6개월 초과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■ '21.1.1부터 개정된 인지세법과 관련하여 인지세 15만원(1억원 이상~10억원 이하)을 납입하시고

정부수입인지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기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■ 만일 미납부 또는 영수증을 분실시 기간에 따라 가산세 최고 300%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납부 후 정부수입인지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(소인처리 불필요)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인지세(정부수입인지) 납부 안내

- 사업주체측에서 정부수입인지 일괄구매 예정으로 계약시 아래 계좌로 인지세의 50% (계약자 부담분, 75,000원)을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1 납부금액 : 75,000원(인지세의 50% 계약자 부담분)

2 납부계좌

구분	은행	계좌	예금주
인지세의 50%	신한은행	100-035-478608	아시아신탁(주)

• 인지세 무통장 입금 시 동·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(예시 : 401동 0203호 당첨자의 경우, 입금자명을 '4010203홍길동'으로 기재)

3 유의사항

- 계약체결 1일 전에 입금 시 전산조화가 가능하므로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인지세 미납시에는 계약서 불출이 되지 않으니,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계약시 수령한 정부수입인지는 계약서와 함께 등기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, 분실·훼손 등으로 인하여 정부수입인지 재구매시에는 전액 (150,000원)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관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재구매시에는 상기 "전자수입인지 구입처"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정부수입인지는 소인처리를 하지 않은 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소유권 이전 등기시 관계기관 소인처리 예정)